

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9명

2. 제안이유

-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심화 방지를 위해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(안 제3조)
-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(안 제6조)
 - ‘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3등급 이하’ 제한 삭제: 신용등급 확대
 - ‘국가, 경상북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받은 경우’ 제한 삭제: 중복지원 허용
-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 규정 정비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,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- 부서검토 :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심화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제한을 삭제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구미시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.